# 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년 12월 30일]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및 모바일(App: L <mark>객 등 불가피한</mark>		
	 	병 방문 시 보호 <b>마스크 미착용</b>		 , 체온

- □ 현장접수처로부터 1m 거리두기를 위한 대기 줄을 마련할 예정이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접수순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여 오후시간**에 접수처로 방문하시면 대기시간 및 접촉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현장접수처 대기자 밀집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상황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LH청약 센터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일정은 [3.공급일정]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 신청 안내】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 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시경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sup>\*</sup>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0. 건설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0호

### 1. 임대대상 및 조건

			세대	당 계약	ҟ면적(m	²)				임대결	조건		전환	최대전	화시	
시 기 경 표	주 택 유	주거 전용	주거		밖의 ·면적			해 당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가능 보증금	임대3	입주 예정	
	형		공용	기타 공용 주차		합계	호수	동	계	계약금 (원)	잔금 (원)	(원)	한도액 (천원)	임대보 <del>증금</del> (천원)	월임대료 (원)	,, 0
	26A	26.87	14.85	10.35	24.08	76.15	28		10,530,000 526,500 10,003,500 1		166,900	(+) 13,000	23,530	101,900		
국   민		37.63						101					(+) 14,000	4,530 34,171	179,400 162,300	<b>′23.1</b> .
	37A		20.79	14.49	33.72	106.63	42		20,171,000	1,008,550	19,162,450	232,300	(-) 13,000	7,171	259,380	

-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mark>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12.30.)</mark>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1월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ul><li>신청자의 직계존속</li><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li></ul>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선정자의 준다메구자와 제대할 구현중목표정에 함께 중제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구전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기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기준					
		1인가구	2,094,142원이하	70%	2,692,468원이하	90%					
		2인가구	2,737,521원이하	60%	3,650,028원이하	80%					
		3인가구	3,120,260원이하		4,368,364원이하						
	<b>Λ</b> Ε	4인가구	3,547,103원이하	50%	4,965,944원이하						
	소득	5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0/					
		6인가구	3,696,824원이하		5,175,553원이하	70%					
		7인가구	3,889,012원이하		5,444,616원이하						
		8인가구	4,081,200원이하		5,713,679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	<b>!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b>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	하					
산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	!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 산	부동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li></ul>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자산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 른 시가표준액 기타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 자산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총자산 산정 시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자산합계금액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에서 차감)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3. 공급일정

### ■ 공급일정(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마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8				신청접수			서류제출	당첨자	711 01 411 74	
	구분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공동인증 10:00~ 24:00 [현	라인] <b>5서 필요)</b> 00:00~ 18:00 장] ~16:00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b>´22.3.15.(화)</b> 17:00 이후	<b>발표일]</b> <b>´22.3.15.(화)</b> 17:00 이후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70%,	1순위 2순위 3순위	미접수		[온라인] 10:00~ 18:00 [현장] 10:00~ 16:00	미접· [온라인] 10:00~	념수	[서류제출 기간]	´22.6.23.(목) 17:00 이후 *나청약센터 또는	'22.7.12.(화) 10:00 ~ '22.7.14.(목) 18:00 [현장계약] '22.7.14.(목)	
일 반 공 급	2인60%)				18:00 <b>[현장]</b> 10:00~ 16:00	미접수	임대공급운영부 광명너부대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당첨자ARS (1661-7700)	10:00~16:00 <b>현장계약</b>		
_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 (1인70~90%, 2인60~80%)	1순위 2순위 3순위			미접수	미접수	[온라인] 10:00~ 18:00 [현장] 10:00~ 16:00	* 등기우편은		장소는 계약자 개별안내 합니다.	

※ 현장 신청접수 장소: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6번길 23)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인 70%, 2인 60%)초과~70%((1인 90%, 2인 8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하며,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월평균소득기준은 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에 따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4 입주자선정(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본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배정호수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고 병		계	사업 지구 철거 민	만65 세 이상 고령 자	<b>ਮ</b>	<b>장</b> 하 이	파독 근로 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 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상 한부 모가 족	비정 규직 근로 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 자등	영구 임대 입주 자		신혼 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26A	4	23	1	2	0	0	1	1	1	1	0	2	1	0	3	2	1	6	1
37A	3	31	9	0	1	2	0	0	0	0	1	0	0	6	2	0	0	10	0

※ 26A형의 1개호, 37A형의 8개호가 임시사용특별공급으로 금회 공급호수에서 제외됩니다.

### ■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선정 방법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	2,094,142원 이하	2,692,468원 이하
2인	2,737,521원 이하	3,650,028원 이하
3인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4인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5인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6인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인	3,889,012원 이하	5,444,616원 이하
8인	4,081,200원 이하	5,713,679원 이하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ဥ	주자 선	선정순	<del>:</del> 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rightarrow$	순위	$\rightarrow$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rightarrow$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b>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b>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을 포함한)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한)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소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증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든기부에 등제된 대표 및 이사는 제2) ⑥ 비정규칙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1956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적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가 ②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질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과장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식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변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무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무광근로자이 가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⑤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 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복교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납복교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⑤ 대상자원전을 보는 한한 협상제 기후 및 모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복교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남복교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⑥ 대상대한하는 자 ⑥ 「각근모르의 송한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⑥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원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소모수사가 오종으로 중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b>다자녀가구</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b>국가유공자 등</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b>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b>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b>영구임대주택 퇴거자</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 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5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 0 연주자 선정순위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7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제1순위: 1)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b>3) 항장시 한국 기구기인</b>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대표자 한명만 신청, 중복시 둘다 무효처리).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2.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 배점합산 (1인 70%, 2인 60%)이하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 장애정도가 (1인 70%, 2인 60%)이하 심한사람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순위 → 배점합산 (2인 60%)이하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 우선공급 적격자 중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b>광명시에 계속</b>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2002.12.31.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기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3자녀이상	2자녀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CF)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커)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⑤,⑥,⑨의 가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 \*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 하며, 신청서 작성시 **가입은행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일괄 조회·확인**해드립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공동인증서 필요)

### ■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신청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 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21001014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mark>공고일기준(2021.12.30.)</mark> 해당단지가 있는 <mark>광명시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mark>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2.3.15.(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확인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공동인증서 필요)

####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 <del>금융·</del> 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주민등록표등본 <b>(신청자)</b>	<ul>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li> <li>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b>(배우자)</b>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b>(신청자)</b>	<ul> <li>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광명시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b>(신청자)</b> <b>(상세발급)</b>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1통

## ■ 기타 보완서류

구비서류	비고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행정 복지 센터 / 공사 양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우선공급대상자 및 배점증빙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모집공고일 현재 민 존속을 포함)을 신청 1년 이상 부양하고 있 - 부양기간을 확인할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수 없는 자 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제대군인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추천 명단에 따	름(별도신청)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 우 3년 이상인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로자로서 괴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 .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 발급처: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급	고용노동(지)청 용노동(지)청
	⑦ 민법상 미성년(만19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	)세미만)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을 확인이 불가한 경우 (X)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 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우선		족, <b>보훈보상대상자</b>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b>특수임무유공자</b> 또는 그 유족, <b>참전유공자</b>	국가보훈처 추천 명단에 따	름(별도신청)
공급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대상자	③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⑤ 아동위탁가정으로서	│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시장 등의 추천서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⑥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⑰ 범죄피해자로서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⑱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⑨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 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⑩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 소확인서	시.군.구청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다	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② 1963년12월21일부터 으로 진출하였던 근로 종사한 사실이 인ㄴ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라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 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 하여 인정되는 지에 한하여 파독 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센터

(2) 마음년대가가 2019년이나 주민등록표등원으로 확인이 함께 경우  ** 단단 인료 제공에 전한 전체 이상으로 직제구속(배우지의 시기속으로 포함) 선택 인공 설심자의 보안한 주민등록표보 전체 이상으로 기계수속에 포함이 전체에 이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2년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보안 전체에 기계수에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2년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3) 규수시계속을 포함 전체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기계수에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 식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보는데 작제존학파양자의주민등관교본 항정복지센터 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저 기업보험지적들원안나법인인 경우(비)등가지자반두당씨는 중기업 중소기업 등 제조업에 중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승수 : 1 년 1 년 2 년 2 대신 경우(비)등가지자반두당씨는 중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승수 : 2 년 2 전 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승수 : 2 년 2 전 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승수 : 2 년 2 전 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승수 : 2 년 2 전 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근로재임원 계약인 상후 : 2 년 2 전 기업 등 제조업에 당시하는 건물재임원 계약인 등 2 분 1 년 2 년 2 분 1 년 2 년 2 분 1 년 2 년 2 분 1 년 2 년 2 분 1 년 2 분 2 분 1 년 2 분 1 년 2 분 2 분 1 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알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중소제조업체 근로제'중소기업기본법 제조조제형이 규정에 장소기업자당하지 등제소업에 공시하는 근로제임원 제외인 경위 경우 전체조업에 공시하는 근로제임원 제외인 경위 경우 전체조업에 공시하는 근로제임원 제외인 경위 경우 전체조로 제 25 29을 1년으로 불(기업성교로자) 고용개선 경우 전체조업에 무료하기 입위 기업 제 1 25 20일 수 1 25 29을 1년으로 불(기업성교로자) 고용개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등제 인한 법률 시형규칙 대기조제 기목부터 마목까지.  -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나 자격도 도시근로자 가구당하별 가구당 월명군소등인 70%(1일 90%, 20일 80%) 이하이고 임구명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권본구원자보관화보안에서가 5 1 번 모음자자 등에 무료가 공기하는 가구 등에 보는 가구 등에 보면 보다 유지를 보면 가지 사건으로 등에 가는 기관 생기 의료 1 20 20% 이하이고 임구명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권본권위인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 일본군위인부 대해자 일본군위인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연기하는 사람 전체조로 가구당 월명군소등인 70%(1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제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용 전체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용 전체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용 전체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용 전체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중족하는 이용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중족하는 이용 2일 90% 이하이고 영구에게 영화를 가지 2일 90% 90% 90% 이하이고 영구에대 영화가 자산요건을 중족하는 이용 2일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작계존속피부양사의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센터
(8) 「공구주택 특별보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서록, 아락 및 가목에 예강하는 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9 전쟁복지센터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에 당하자 자난요건을 충족하는 가유공자보완보산에다와, 당 18 만구유장자 독한모우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후족 제2)  - 다. 일본고위안부 폐작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전네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0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난요건을 충족하는 함인 모구 유족(참전유공자 후족 제2)  - 마. 전네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0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함인이들은 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함인이들은 이 8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함인이들은 이 8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함인이들은 인 80%(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명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도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조시근론자 가구원수별 기구당 월명균소득의 70%(12) 90%(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조시근론자 주면서 (시전계) 생계의료주거 교육 전체 20%(2년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10년도 조시근론자 주면서 (시전계) 보안되는 경관에 10년 10년 3년 10년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90% 2인 90% 이하이고 영구만대 일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기유공처보 발보보신에자가 3 - 1 등 인구유공자 등 수입유공자 집 기유공처보 발보보신에자가 3 - 1 등 인구유공자 등 기원 구유공자로 수입유공자 교회 보는 그 유족(참인유공자 유족 제외) - 다. 일본교위인부피해자 의본교의 보는 그 유족(참인유공자 유족 제외) - 다. 일본교위인부피해자 의본교의 자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 이하이고 영구만대 암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학보모가족 증명서 생경복지센터 90% 2인 90% 이하이고 영구만대 암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적인들으로 연결되지 수 등 전체 역 경우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역 수급자 설 경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수원공의 신경 내역 (2주자 수원자) 수의 전체로 되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 이하이고 영구만대 암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이 전년도 되는 교육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이 이하이고 영구인대 암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이 전년도 되는 교육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이 이하이고 영구인대 암주자 자신요건을 충족하는 이 전년도 되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이 이하이고 영구인대 암주자 지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전년도 되는 기구원수별 기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90%이 하하이고 영구인대 암주자 지산요건을 충족하는 이 전체 등 자신의 경로 지사를 하하여 결정 기관 기관수 명구인대 암주자 주명서 (자원위계층) 복지대보급이 등 인사 기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다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고 영구간대 입우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과기유공재보보실상대상자 5 -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시 병원수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복한이탈주민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복한이탈주민 4시. 군 구청 생경부자 전성 1억 1억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복한이탈주민 4시. 군 구청 경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일대 압주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여자를 경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수택자) 성경 내역 생계으로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형 하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일대 압주자 자신요건을 중축하는 이자를 지시를 수형 하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본지대성급여 보존 기관을 기관하여 결정되었다면 1인 1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론보살에서와 5-18 인무주의자로자 특수임무유공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지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정 생경시에 배점세류 (입주자 전설으로 수 당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 성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자이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지산요건을 충족하는 이후복지시설 보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 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압주자 지산요건을 충족하는 이후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되소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위상 다양부당 경검 대상자 증명서 (자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상의 확인 첫 한부모가족 증명시 우선들본 자상위 확인 첫 자왕인시, 한부모가족 증명시, 우선들본 자상위 확인 첫 두 지상의 확인 첫 등 사상위 함인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호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학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학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발표 제1학 가목 해당자임을 확인함 수 있는 서류 (공고주택 특별법 시행구원) 환경복지센터 (공고전원 등 차상위 확인 수 있는 서류 (공고전원 등 환성) 후 있는 시료 (공고전원 등 환성) 후 있는 시료 (공고전원 등 환성) 후 있는 시료 (공고전원 등 환성) 후 전원 등 환성 등 환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지방보훈청
등일순위 경쟁시 배원서류 (입주자 전면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영內, 2인 80%) 이하이고 영구인대 일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복찬이탈주민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선기준의 스독인점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자이어야 함)  - 사. 65세 이상의 작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 성기준의 스독인점액 인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자이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동복지시설 되소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보여 (지상위계층) 복지내상급여변 경시·정결과 통보서, 자상위 문인부당 경감 대상자 증명 서자 참근로자 확인세), 장애수당대상자 학원시 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자사가 영구암대주택의 압주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자 및 그 기구원 포함)  ③ 차성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당시, 연구기구족 증명서, 자살 문인부당 경감 대상자 중에서자와 같으로 가 함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영구보다는 경기 등 사업에 관하다면 상자 함인서, 전부모구목 증명서, 자상위계층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孝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상위 본인부당 경기 대상자 증명서(자항 구당자원 물 환입할 수 있는 서류 무리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상위 본인부당 경기 대상자 중에서자함으로 가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함인서, 자항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함으로 가 확인서), 전에수당대상자 함인서 등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등 명서 사항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리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참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함으로 가 확인서), 전에수당대상자 함인서 등 차상위계층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에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사상위계층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에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우전 등 차상위계층에 전쟁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에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에 전쟁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에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에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에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에 함께 상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중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보다 기관 등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보다 기관 등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층이 보다 기관 등 명시 위험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위계환 등 환경 등 차상위계환 등 차상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50% 2년 80% 이하고 영구임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보안이탈주민   사고.구청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소 등산이탈주민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전태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소 등산이행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전태자이어야 함)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수천서, 이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수천시 이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수천시 이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수건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참산하철과 통보서, 자상위 본인부당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왕기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경에 대로 주가 교육급여 당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경에 한다는 사람   수간 사람이 경에 한다는 사람   수간 사람이 경에 한다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당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당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당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   수가 등에서, 한국 의원 서우   수간 사람이 함께 하고 하는 사람   수간 사람이 본인부터 감 보서, 자상의 본인부터 감 보서, 장의 논인부터 감 보서, 장의 수간 사람이 하는 사람이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가장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가장급여 대상자 증명서, 가장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왕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왕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왕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왕급여 대상자 증명서, 작왕급여 당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자상에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수 있는 사람이 함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점서류 (입주자 전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전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자이어야 함)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압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되소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소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자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존재시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사당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중명서(자 물로 차상위 확인 성 등 차상위계층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기 사장의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③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등 명서 (사랑의 물인의 수급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해수보고 환경상에 등 차상위계층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작성에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작성에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 함입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 함입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 함입한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자상위계를 함입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생계을 함입할 수 있는 전략적 등 생계 등 함께 등 생계 등 생계 등 함께 등 생계 등 생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인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이동복지시설 보스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 4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본인부담 경간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 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 상자 확인서, 무선들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시가 영구임대주택의 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함 가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있어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인 독봉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로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무리가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로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로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당하는 기상 행정복지센터 생경보임 기상이 되었다면 기상되었다면 기상		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 주택자이어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 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	행정복지센터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2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성과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황부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성과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황보고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 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라가윈 포함) - 라가윈보험공단 (청과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자항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계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미 상대 등 차상위계 등 함께 등 함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가. 거목부터 다독까지의 규정에 문어는 사람으로서 목도교통수정한 발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의대차계약서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9)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등 보여 대상자 증명서, 자황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여그이디스태에 거즈/게야되에 하하하는 주태처야조하거츠 기이되는 임대차계약서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⑩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

### ■ 서류제출 방법

- o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 시 구비서류 현장확인 이후, 추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에 한하여 아래 인터넷신청자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2.3.15.(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mark>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만</mark> 접수를 받습니다. <u>서류제출기간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u> 처리되며, 서류미비 혹은 서류미도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① 인터넷 서류제출 [기한 : '22.3.21.(월) 10:00 ~ 3.23.(수) 18:00]

- o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서류제출 유의사항

- o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u>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2.3.23.)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o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o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o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o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ㅇ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o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u>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u> 응하여야 합니다.
- o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② 등기우편 서류제출 [기한 : '22.3.21.(월) ~ 3.23.(수) 우체국소인분 까지 유효)]

- o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명(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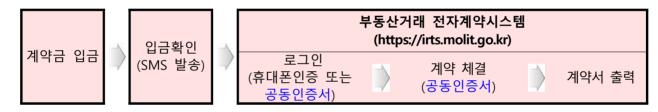
### ■ 당첨자 발표

## '22.6.23.(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사실을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1661-7700)으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u> 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기간 : '22.7.12.(화) 10:00 ~ '22.7.14.(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22.7.14.(목) 10:00~16:00, 계약장소 추후 개별공지]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li>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하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 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인감증명망식) 내리인 신문증, 위임성(공사 소성양식), - 당첨자 인간증명서(본인박급부) 당첨자 인간도장

관련항목		유의사항			
다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TAIL CAROMA OF BLAT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결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인상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록		
	, , , , , , , , , , , , , , , , , , , ,		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	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한	증비율		
임대대상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및 조건	100/ 01 51				
	10%이하 10%초과 30%이하	100% 110%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증비율		
	또는 자산기준 초과		140% 대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할 수 있고 군인 모대시까지 기준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신청자격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60414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구락도뉴어구 확인장입 및 인정기군은 구락중입에 원인 규칙」제52호 및 제53호에 떠듭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고그이저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공급일정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 마감시 LH청약센터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입주자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유				
선 정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u>1세대(세대구성원 전원)</u> 1주택 신경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결정 및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 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 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지구여건

•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서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서울특별시, 서쪽은 부천시, 남쪽은 시흥시, 안양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국민임대(금회공급, 101동)와 행복주택(추후공급, 102~103동) 혼합단지입니다.
- 행복주택 공사일정.(예정) : '23.01~ 24.12.(행복주택 보상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구여건

- 101동~103동은 같은 단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101동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완료상태에서 102동, 103동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102동, 103동 공사진행시 101동에 면하여 있는 주차장 및 부속동 공사 병행으로 불가피하게 101동 입주자들에게 소음, 분진, 통행제한등의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국민임대, 101동) 입주자는 행복주택(102동, 103동) 공사 완료시까지 101동 정면에서 좌측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되어 우측방향으로만 통행 가능합니다.(단, 보행자통행은 가능합니다.)
- 또한 행복주택 공사 완료시까지 도로변의 주차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차량 진출입은 단지서측 목감천변 8m 도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일방통행 도로로 인하여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진입하여야 하고 진출시에는 광명교 방향으로 진출가능합니다.

### ■ 개요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8~15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됩니다.
- 주차대수는 지하 170대(국민임대 55, 행복주택 115)이며, 이 중 일반형 87대, 확장형 57대, 경형 17대, 장애인 6대, 전기차 3대 설치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45대, 공공시설 주차장 11대입니다.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는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55대 중 행복주택 공사 완료시까지 41대만 이용가능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공원수목 및 목감천변 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부대시설 파라펫·옥상난간이 있음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101, 102, 103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과 수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에 의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고, 중계기 설치에 따라 최상층 세대에 전자파가 발생할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임입니다. 단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단지 주변에 전신주, 변압기,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주변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임의점유 금지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도 조경공간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계획여건에 따라 변경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외관디자인(색채,패턴 등)은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색채디자인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지하주차장

- 단지 내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장 출입구의 입차 방향에 디지털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트레이, 덕트,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이 줄눈부위에서 차량통과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로 일반 및 장애자용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팬 가동 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훼룩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준공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가 불가 합니다.
- 급속충전기(1대) : 행복주택동 102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 인근(행복주택 입주 후 사용가능)
- 완속충전기(2대) : 공영주차장 상가 인근(행복주택 입주 후 사용가능)
- 이동식충전기(2개소) : 국민임대동 101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 인근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 세대별 여건차이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차량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주차장은 단지 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분산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101동 필로티 공간에 설치 예정)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이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기타 공통사항

- 단지 내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엘레베이터, 어린이놀이터(행복주택 완공 후 이용가능),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천정 단열 노출)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면분할창호적용으로 발코니로 이삿짐 운반이 불가하며, 사다리차 이용 시 발코니 및 복도창호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단, 발코니 외부 하부창은 고정창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전기실/발전기실, 빗물저류조 및 펌프실 등에 장비류가 설치되어 가동시 또는 정전으로 인한 비상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빗물저류조 설치위치:1개소(102동 인근 지하층), 펌프실 설치위치:2개소(101동,103동 인근 지하층), 전기(발전기)실이 설치위치:2개소(101~102동 사이 단지내 진입경사로 하부, 상가 지하층)]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 부대시설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 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연휀은 101동 1층 관리사무실 MDF실 후면 102동 지하 1층 주차장 103동 지하1층 주동출입구, 101동/102동/103동 옥상 제연휀룸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1등급) 적용됩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와 택배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화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은 각 동에 1개소, 총 3개소 설치되며, 동별로 거리 및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 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감재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부세대 간 벽체가 경량칸막이로 시공되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 설치부위에는 벽체·천정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등)**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실 커튼박스 깊이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치품목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세대내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등의 일부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입니다

## 세대 내부여건 (마감재 및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비디오폰단말기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및 공동현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 (가스밸브차단, 난방온도),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 욕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난간이 없으며, 입면분할 창호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외부 하부창은 고정창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면한 창틀 밑면은 벽타일이 아닌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결로방지 단열재가 외부와 면한 부위에 시공되며 수성페인트로 마감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세탁기 콘센트, 보일러콘센트, CO2감지기, 전열교환기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공통사항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인덕션, 전기오븐, 시스템에어컨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북카페, 건강센터 등)에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물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석재 마감부위는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혼드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벽체의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 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 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를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복도에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 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 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일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개성건설 주식회사 태왕이엔씨 주식회사 대신전력 ㈜나산이엔씨	-	㈜금정이엔씨(소방)

## 기타사항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 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높이조정		
거실	야간센서등		
	비디오폰높이조정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설치 가능)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편의시설 설치형태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점에 설치 담당부서(LH 광명시흥사업본부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 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 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가 보고(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 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 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 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 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 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주택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사중자, 외출자중자, 국구자중자, 이윤자중자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 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 행기구		
기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 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_ 16010777101171012 20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그용된 포함경기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자산금액 한계에서 차	자산금액 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n n 1 · 1 · 1	임대보증금	- 사외모성성모시스템을 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	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전화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9:00~18:00)		
임대문의	인터넷	- LH청약센터 ( <u>https://apply.lh.or.kr</u> ) - 마이홈포털 ( <u>https://www.myhome.go.kr</u> )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청 약	· P C: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2.30.

